#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3010

발의연월일: 2021. 10. 28.

발 의 자:김영주・이용빈・임오경

조승래 · 김교흥 · 이학영

한준호 · 김진표 · 허종식

신현영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 정부는 2021년 8월 아프가니스탄에서 우리 정부와 함께 활동했던 현지인 조력자들과 이들의 가족들을 받아들였음. 아프가니스탄의 정세가 긴박하게 돌아가는 현지 상황에서도 우리 정부의 주도 하에 극적으로 카불 탈출 작전에 성공하였음.

이들은 모두 우리 대사관, 한국국제협력단(KOICA), 한국병원, 한국 직업훈련원, 한국 기지에서 우리 정부의 아프간 재건사업에 협조했던 사람들임.

선진국의 대열에 합류한 대한민국 역시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에 맞는 책임을 다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이들이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충분한 지원이 보장되어야 할 것임.

이에 대한민국에 특별히 기여하였거나 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하였다

고 인정되어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및 그 동반가족으로서 국내 정착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이하 "특별기여자등"이라고 함)의 처우에 관하여는 「난민법」에 따른 난민 인정자의 처우 규정을 준용하고, 특별기여자등에 대해 초기생활정착 및 취업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안 제14조의2 신설).

#### 법률 제 호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특별기여자의 처우) ① 대한민국에 특별히 기여하였거나 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하였다고 인정되어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및 그 동반가족으로서 국내 정착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이하 "특별기여자등"이라고 한다)의 처우에 관하여는 제14조, 「난민법」 제31조부터 제36조까지 및 제3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별기여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1. 초기생활정착자금 및 필요한 기타 생활지원
- 2. 고용 정보의 제공, 취업알선 등 취업에 필요한 지원

#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lt;신 설&gt;</u>	제14조의2(특별기여자등 처우) ①
	대한민국에 특별히 기여하였거
	나 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하였다
	고 인정되어 대한민국에 거주하
	고 있는 외국인 및 그 동반가족
	으로서 국내 정착을 지원할 필
	요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
	하는 사람(이하 "특별기여자등"
	이라고 한다)의 처우에 관하여
	는 제14조, 「난민법」 제31조
	부터 제36조까지 및 제38조의
	<u>규정을 준용한다.</u>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
	별기여자등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초기생활정착자금 및 필요한
	기타 생활지원
	2. 고용 정보의 제공, 취업알선
	등 취업에 필요한 지원